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의무사항 확인 철저

1. 평고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는 승인관청이 사용승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행의무사항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금번 사례는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이 있었으나 건축주·설계자·감리자 등이 변경된 설계 내용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건축물의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행의무 확인보고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승인관청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협회는 회원사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확인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교통정책과장), 대전광역시(공공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교통기획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기도지사(광역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공공교통정책과장), 광주광역시(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교통정책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협회

주무관	이곡자	사무관대우	진영민	도시교통과장	박건수	2019. 11. 26.
협조자						
시행	도시교통과-5446	(2019. 11. 29.)	접수	M00000362856	(2019. 12. 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05	팩스번호	044-201-5581	/ kokja2@molit.go.kr	/ 비공개(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